#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24

발의연월일: 2020. 7. 13.

발 의 자: 박주민・이수진비・오영환

진성준 • 윤재갑 • 윤미향

권인숙 • 권칠승 • 장혜영

진선미 · 장철민 · 전혜숙

김승남 • 박영순 • 박성준

김경만 • 이원택 • 류호정

배진교 • 이재정 의원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등의 전문자격사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을 위반하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등록이 취소되는 반면, 의료인의 경우에는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만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관계법령 이외의 법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의료행위 특성상 의료인에게는 여타 전문자격사보다 높은 또는 유사한 수준의 유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자격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겠음. 특히,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의료인이 된다면 의료인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국민은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울 것임.

이에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면허 재교부가 3년간 불가능하였던 것을 5년간 불가능하도록 하여,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4호 및 제65조제2항 단서).

법률 제 호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제317조제1항"을 "제297조 내지 제303조, 제305조, 제3 17조제1항, 제339조,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로, "「모 자보건법」"을 "「모자보건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의료 관련 법령 을"을 "법령을"로 한다.

제65조제2항 단서 중 "제6호 또는 제8조제4호"를 "제6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로, "3년"을 "5년"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제8조(결격사유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	
료인이 될 수 없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	4
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	
조, <u>제317조제1항</u> 및 제347조	<u>제297조 내지 제303조,</u>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제305조, 제317조제1항, 제339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조,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	<u>에 한정한다)</u>
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	
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	
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	
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	
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	
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	
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u>「모자</u>	
<u>보건법」</u> ,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u>의료 관련 법령</u>	
<u>을</u>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 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 지 아니한 자

> --------) 제65조(면허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저 (생 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내, 제1항제4호·제6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병부터 3년이내에는 재교된 날부터 3년이내에는 재교

세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1
(현행과 같	(급)		
2			
		제63	호에
따른 사유	로 면허기	가 취소된	<u>경</u>
우에는 취소	소된 날부	-터 3년 <sup>c</sup>	<u>기내,</u>
제8조제4호	·  -		

보건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령 을-----

특례법 | -----

부하지 못한다.	
	<u>5년</u>
	<u>.</u>